#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8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 장경태·김병기·김동아

박 정・박민규・이광희

한준호 · 황명선 · 최민희

박해철 · 강준현 · 백승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 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이나 외국에게 유출한 경우 현행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법률들은 간첩죄 대비 처벌이 약해 외국기업이 아닌 적국, 외국 정보기관 등에 의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경우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간첩죄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적국, 외국에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적국, 외국에 의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98조).

법률 제 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를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에 유출한 자"로 한다.

제9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외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에 누설한 자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8條(間諜) ① (생 략)	第98條(間諜) ① (현행과 같음)
②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	②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
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설한 자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u> 적국에 유출한 자</u>
<u>&lt;신 설&gt;</u>	③ 외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15
	<u>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u>
<u>&lt;신 설&gt;</u>	④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에 누
	설한 자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자도 전항의 형
	<u>과 같다.</u>